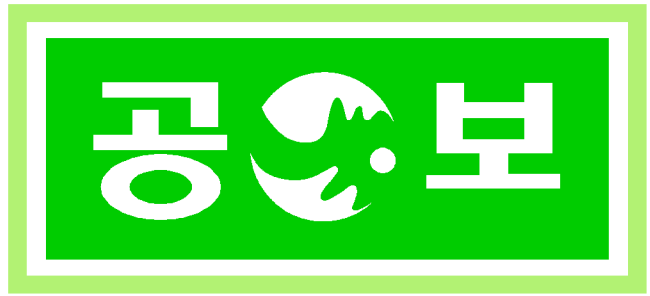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019 호 2016. 7. 28. (목)

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8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] 2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28호[도로명주소 고시]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2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30호[도로명 부여 고시] 13

공 고
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729호[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730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2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731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2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732호[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3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734호[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] 39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**박천동** 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8호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1조 중 “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”을 “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금고를”를 “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
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른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
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”를 “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”로 하며,
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협력사업비 공개 등)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
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
하고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
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----- (10)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----- (21) - 총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 -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 - 자기자본이익률 (수익성, 6점) -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유동성, 1점)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.	31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----- (6점)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----- (5점) 다. 구에 대한 대출금리----- (4점)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----- (3점)	18	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----- (8점)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----- (7점) 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(5점)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20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-- (7점)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----- (5점) 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----- (7점) 라.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----- (3점)	22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----- (5점) 나.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----- (4점) *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구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9	

[별표 2]

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3조제1항 관련)

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가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)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한다.

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(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)
- 평가방법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배점
 -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다만,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- 총자본비율(안정성)
 -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 7점)로 평가.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
- 자기자본이익률(수익성)
- 유동성키버리지비율(유동성)
 - ※ 금융감독원,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
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

-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
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
 -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
-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
 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
교·평가한 후 배점
-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
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

- 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
 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(전자납부 등)
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
 -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
 - 국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
및 무인점포,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여 배점
 -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
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
리 가능
 -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

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

- 금고관련 세입·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-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

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라.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

-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

-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◆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 ◆

1. **개정이유**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(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, 2015. 12. 24개정)」의
개정내용에 따라 현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

2. **주요내용**

가. 총 금고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 (제2조제3항)

-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.

나. 구와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 명시(제9조제1항 및 제2항)

-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,
총액은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함

다.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(별표 1)

- 대손충당금적립률(2점) ⇨ 유동성커버리지비율(1점)
-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배점 상향(5점⇨7점)
-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 하향(5점⇨4점)

라. 그 밖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일부조정(별표 2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128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성혜1길 40-16(시례동)외 1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399-3	울산광역시 북구 상해1길 40-16(시례동)	2016-07-28	기존 자연마을인 상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2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58-4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5길 20(연암동)	2016-07-28	이 지역의 옛 지명이므로 현재도 두부곡 마을이 존재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3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자지구 838-41	울산광역시 북구 화암2길 34(산하동)	2016-07-28	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4	울산광역시 북구 담사동 131	울산광역시 북구 우기2길 2-5(담사동)	2016-07-28	기존 자연마을인 우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5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림촌지구 396 8-1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5길 6-11(진장동)	2016-07-28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림촌지구 396 8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5길 6-9(진장동)	2016-07-28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14-3	울산광역시 북구 산영로 1075(연암동)	2016-07-28	울산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6-18	
8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08-4, 708-2, 708-3	울산광역시 북구 금곡2길 10-9(무룡동)	2016-07-28	예전 지명인 금곡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9	울산광역시 북구 증산동 1265-6	울산광역시 북구 증산산영2길 42(증산동)	2016-07-28	증산 산영단지 내부도로라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5-02-02	
10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86-5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10(연암동)	2016-07-28	주변의 지명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	
11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자지구 538 3L	울산광역시 북구 신해동2로 244(신하동)	2016-07-28	신해지구 중앙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2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5길 28(연암동)외 3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 28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중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5길 28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58-4	2016-07-28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우가2길 2-4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31	2016-07-28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5길 6-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혼지구 398-8L	2016-07-28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로 105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86-5	2016-07-28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30호

도로명 부여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고 시 일 : 2016. 7. 28.
- 고시방법 : 공보,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·게시판 게재
- 고시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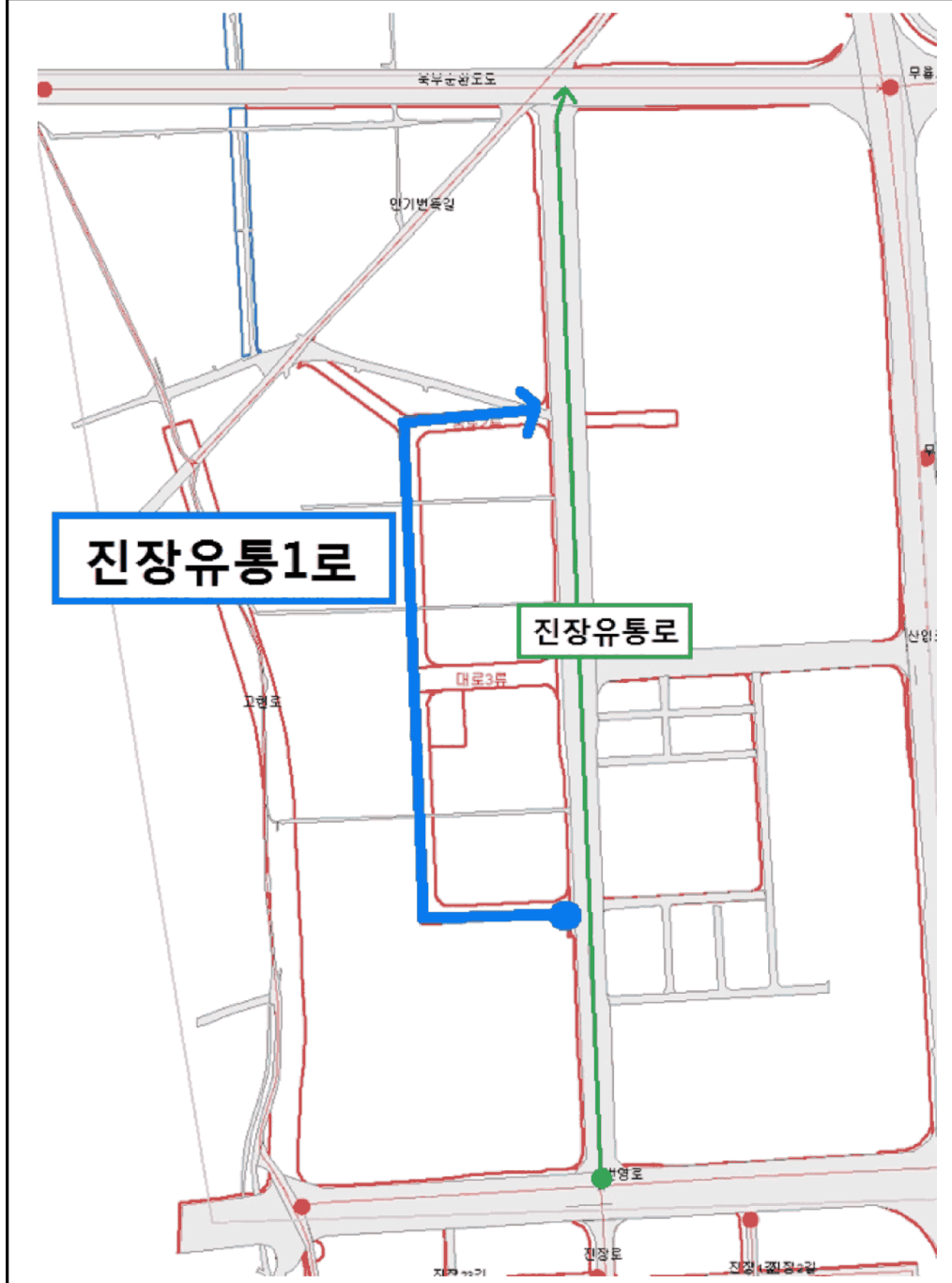
도로 위계	도로구간		연장 (m)	폭 (m)	기초 간격 (m)	기초 번호	심의결과	부여사유	유 사 도로명
	시점	종점							
로	진장동 287-3	진장동 287-5	768	17.5	20	1-78	진장유통1로	진장유통로에서 분기 된 도로로 진장유통로 와 연계성을 반영	진장유통로

- 도로명의 부여 요건 및 절차

도로명 부여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→ 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	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 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
사업시행자 신청		14일 이상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	· 심의 결과 · 내용 및 절차

- 도로명부여도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계(☎052-241-75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진장물류단지 로급(도로명 부여:1건)

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6 - 729호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
 -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,
 -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,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(제1조)
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삭제
-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원화(제5조제2항)
 -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
-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(제9조제2항)
 - 「사무관리규정」 →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-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(제15조) 개정
 - 제15조3항의 “재결”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함.
 - 구청장은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문 개정
- 기타 용어 순화를 위한 조문 개정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
- 전화번호 : 052)241-7103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”으로, “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복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구”를 “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공개모집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”를 “행사할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사유서등”을 “사유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에 대한 제결을 하고, 그”를 “이의신청에 대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--- ----- ----- 북구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-----</p>
<p>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----- ----- 공개모집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6조(위원회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(생략)</p> <p>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「사무관리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행사할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-- -----.</p>
<p>제15조(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 사유서 등 -----.</p> <p>③ ----- 이의신청에 대한 -----.</p>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6 - 730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
- 기능·인력 재배치에 따른 오수·분뇨 관련 사무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되고,
- 주거복지 사무가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이관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 개정(제1조 관련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제113조
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
-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
 - 오수·분뇨 사무 : 복지경제국 → 건설도시국
 - 주거복지 사무 : 건설도시국 → 복지경제국

3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제11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5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

- 전화번호 : 052)241-7103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제113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긴급복지”를 “긴급복지, 주거복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”를 “축산폐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재난관리”를 “오수·분뇨, 재난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주거복지, 도시미관”을 “도시미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제113조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 두는 행정기구,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(생 략)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복지연계, 통합조사, 생활보장, 자활고용, 의료보장, 복지서비스 조정·연계, 자원봉사, <u>긴급복지</u> 등에 관한 사무 2. ~ 5. (생 략) 6.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</u> 처리 등에 관한 사무 7. ~ 10. (생 략)</p>	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----- ----- <u>긴급복지,</u> <u>주거복지</u>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축산폐수</u> ----- 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(생 략)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, 건설행정, 도로의 개설·관리, 치수 및 하수업무, <u>재난관리</u>,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.·3. (생 략) 4. 건축, 주택행정,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(시설) 신축, <u>주거복지</u>, <u>도시미관</u> 등에 관한 사무 5.·6. (생 략)</p>	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----- ----- <u>오수·분뇨, 재난관리</u>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도시미관</u> ----- 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731호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,
- 나. 우리 구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조정
 - 자치행정과 → 창조경제과
- 나. 승강기 관련 업무
 - 창조경제과 → 안전정보과
- 다. 전통공예산업 육성 업무
 - 창조경제과 → 문화체육과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 및 제112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

4. 개정 규칙안 및 신·구 별표 대비표 : 따로 붙임.

5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

- 전화번호 : 052)241-7103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자치행정과, 문화체육과, 창조경제과, 안전정보과의 분장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 본청 실·과 사무분장표

부 서 명	분 장 사 무
자치행정과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삭제> 7. <삭제> 8. ~ 53. (현행과 같음)
문화체육과	1. ~ 45. (현행과 같음) 46.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<신설>
창조경제과	1. ~ 55. (현행과 같음) 19. <삭제> 20. ~ 58. (현행과 같음) 59.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<신설> 60.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>
안전정보과	1. ~ 67. (현행과 같음) 68.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임에 관한 사항 <신설>

신·구 별표 대비표

부서명	현행	개정안
자치행정과	1. ~ 5. (생략) <u>6.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</u> <u>7.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</u> 8. ~ 53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삭제> 7. <삭제> 8. ~ 53. (현행과 같음)
문화체육과	1. ~ 45. (생략)	1. ~ 45. (현행과 같음) 46.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<신설>
창조경제과	1. ~ 18. (생략) <u>19.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</u> 20. ~ 58. 생략	1. ~ 55. (현행과 같음) 19. <삭제> 20. ~ 58. (현행과 같음) 59.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<신설> 60.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>
안전정보과	1. ~ 67. (생략)	1. ~ 67. (현행과 같음) <u>68.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<신설>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3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2조(국장 및 실·과장의 직급 등) ①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의 국장, 실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실·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6 - 732호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하고,
- 나. 이와 함께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,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조정 : 자치행정과 → 창조경제과
- 나. 승강기 관련 업무 : 창조경제과 → 안전정보과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 및 제112조
- 나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2항

4. 개정 규칙안 및 신·구 별표 대비표 : 따로 붙임.

5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

- 전화번호: 052)241-7103, 팩스번호: 052)241-71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세부결재 한계(제4조제1항 관련)

행정지원국

【자치행정과】 : 새마을금고관리 업무 삭제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장 결재
		담 당 자		실 · 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
6. 새마을금고관리 <삭 제>	가.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	기안				○	
	나. 새마을금고 지도감독	기안		○			

복지경제국

【창조경제과】 : 승강기 관련 업무 삭제, 새마을금고관리 업무 신설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장 결재
		담 당 자		실 · 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
28.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<삭 제>	가.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	기안		○			
	나. 승강기 검사의 지연	기안		○			
	다.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	기안		○			
53. 새마을금고관리 <신 설>	가.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	기안				○	
	나. 새마을금고 지도감독	기안		○			

건설도시국

【안전정보과】 : 승강기 관련 업무 신설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	구 청장 결재
		담 당 자		실 · 과 장	국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	
51.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<신 설>	가.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	기안		○			
	나. 승강기 검사의 지연	기안		○			
	다.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	기안		○			

신·구 별표 대비표

【자치행정과】

현 행		개 정 안	
단 위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건구분 담당자 실무자	기안 및 전건구분 담당자 실무자
1. ~ 5. (생략)		신·확장 담당	신·확장 담당
6. 새마을금고 관리	기.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나. 새마을금고 지도감독	기안	기안
7. ~ 51. (생략)		신·확장 담당	신·확장 담당

【안전정보과】

현 행			개 정 안		
단 위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진결구분 담당자 실 담당자	기안 및 진결구분 담당자 실 담당자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진결구분 담당자 실 담당자
1. ~ 50. (생략)		구 청장실 구 청장실 구 청장실			
	단 위 임 무	1. ~ 50. (현행과 같음)			
	세 부 사 무 명	51. 승강기 제조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<신 설>	기안	가. 승강기 유행정지 명령 나. 승강기 검사의 지연 다.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경수	○ ○ ○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제10조(문서의 결재)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, 출장,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6-734호

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지하수개발·이용 시설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장기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제 목 :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6. 7. 28. ~ 2016. 8. 11.(14일)
3. 공고내역 : 따로 붙임
4. 공고장소 : 공보 및 구청 홈페이지
5. 유의사항 :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
6. 문 의 처 :
 -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(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, 2층)
 - 전화번호 : 052-241-7853, 팩스번호 : 052-241-7869

지하수이용부담금 공시송달 내역						
연번	납부자번호	납부자	납기일자	징용료(원)	부과대상	징용기간
1	181211-*****	(주)신아**	2016-08-18	886,650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0번지 1호	2014.11. ~ 2016. 6.